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33
------------	------

2016. 9. 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9.5. 상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서울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에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이에 서울비엔날레 행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서울디자인재단 내에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음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서울 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7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디자인재단(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 관련법령
 - ▶ 법령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조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주요사업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
-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장 조성 및 운영
 - 주제, 도시 전시 기획 및 제작 설치
 - 현장프로젝트 기획, 제작, 설치 및 운영
 - 국내외 유관 워크숍 행사 기획 및 참여
 - 국제스튜디오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학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동 작업 및 홍보

○ 출연의 필요성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 6호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임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한 담론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필요

- 글로벌 도시 거버넌스와 시민 건축문화 향상의 장 마련을 위한 2017년 서울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출연 필요

※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후원, 기부금 등 민간자원 유치 병행

- DDP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 도시건축, 디자인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DDP 장소 마케팅 및 서울비엔날레와 DDP 홍보의 시너지 효과 창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가. 동의안 제출경위

- 이 동의안은 2017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울디자인재단은 문화본부 산하 출연기관이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업무 및 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번 출연동의안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디자인재단 내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을 설치¹⁾하였으며, 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15. 12)을 거쳐 총감독 선임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16. 2)중에 있으며, 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은 현재 베니스비엔날레, 런던건축페스티벌 같은 국제행사와의 교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개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1) 16.2월에 4명 채용, '16.10월에 3명 채용예정임 (총 7명으로 구성).

〈추진경과〉

- ‘15.06. : 서울디자인재단 직제 개편(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 ‘15.07.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설치 운영계획 수립
- ‘15.12.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 ‘16.02.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동총감독 선임(2명)
- ‘16.07.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사업비 55억)

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요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과 세계 도시 간의 도시·건축현안에 대한 국내외적 교류와 함께 도시건축·디자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써 2년(홀수년) 단위로 개최되는 행사로 오는 2017년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UIA 2017서울세계건축대회”(‘17년 9월 3일~10일)와 같은 해에 개최될 예정임.
 - 참고로 2017 UIA²⁾ 세계건축대회는 UN이 인증한 건축올림픽으로 3년마다 5대륙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는 국제적 건축행사로 지난 2011년 도쿄 세계건축대회에서 서울로 유치한 바 있음.
- 서울건축비엔날레는 전시장 조성을 통한 국제전시 개최, 현장 프로젝트 기획·제작·설치, 국제심포지엄 및 국내외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으로 약 2개월 간 개최될 예정임.

2) 국제건축연맹(Union Internationales dea Architectes)은 1948년 창립되어 전 세계 124개국, 130만 건축가(사)를 대표하며 UN에서 인정받은 세계 유일의 국제건축가(사) 단체 연합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주요 내용〉

프로그램	내 용
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 조성, 국제전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 전시 주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 공동성 : 물, 공기, 땅, 에너지 - 도 시 : 베를린, 런던, 싱가포르, 뭄바이, 홍콩, 상하이, 코펜하겐, 디트로이트 등 - 아레나 : 서울 랩 프로그램 운영 공간 설치(워크숍, 건축학교, 퍼포먼스, 영화 등)
서울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프로젝트 기획, 제작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 세운상가, 을지로 지하상가 등 주요현안 지역 현장 프로젝트 ▶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유관 워크숍, 행사 기획,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성 맵핑 : 서울연구원 연계 - 워 크 쇼 프 : 영국문화원, 독일문화원 등 연계 - 공동기획 : 아트센터 나비, MAAT(리스본), MAXXI(로마), Urban Next(뉴욕) 등 - 협 력 : 영국문화원, 독일문화원, 이탈리아문화원 등 ▶ 국제스튜디오 운영(국내외 대학 연계 디자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 - 해외 :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베니스건축대, 싱가포르국립대, 홍콩대, 통지대, RCA(런던), EPFL(로잔) 등 ▶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시민건축투어, 민관학 워크숍 등

다. 출연 타당성 검토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서울비엔날레로 약칭함)는 서울 건축·도시 환경의 여건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목표로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기관·단체, 건축가·도시설계가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행사로 2017년 행사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부문의 서울 대표 행사인 서울비엔날레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마다 개최하는 서울건축문화제는 베니스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처럼 세계적인 국제행사와 비교할 때 경쟁우위에 있지 못한 점, 2017 UIA서울세계건축대회는 1회성 행사로 유치된다는 점에서 볼 때 오는 2017년 서울비엔날레 행사를 계기로 정례적 서울 대표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서울비엔날레 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비엔날레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조례로 입법함으로써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³⁾
-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 투자심사는 거쳤으나 중앙투자심사(‘16.10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임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3)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제8호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과 같은 조 제10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4) 금번 출연 동의 건은 시의회 예산심의와 별도로 예산심의에 앞서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333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서울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에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 나. 이에 서울비엔날레 행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서울디자인재단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디자인재단(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레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282호)

나. 주요 사업(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
-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장 조성 및 운영
 - 주제, 도시 전시 기획 및 제작 설치
 - 현장프로젝트 기획, 제작, 설치 및 운영
 - 국내외 유관 워크숍 행사 기획 및 참여
 - 국제스튜디오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학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동 작업 및 홍보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호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임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한 담론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필요
- 글로벌 도시 거버넌스와 시민 건축문화 향상의 장 마련을 위한 2017년 서울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출연 필요
 - ※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후원, 기부금 등 민간자원 유치 병행
- DDP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 도시건축, 디자인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DDP 장소 마케팅 및 서울비엔날레와 DDP 홍보의 시너지 효과 창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조 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다. 기 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 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5,500백만원)

마.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박미진 (☎7616)